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21년 4월 20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4월 6일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1년 4월 6일

라. 상정일자: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1.4.20.)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용역 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할 때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복수의 검사수단을 활용하여 유사성 검증 절차 의무화 (안 제13조)
- 나. 연구용역 결과의 유사성 검증결과 연구부정이 있는 경우 불이익 부과 등 제재방안 근거 마련 (안 제13조)

다. 연구용역 내용의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원문의 부분공개 및 비공개 사유와 향후 정보의 공개시점 규정 마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1.2.10.~2021.3.2.) 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기획예산과): 해당없음
- 3)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최광호)

가. 제정 취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용역결과 공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연구용역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조문 순서 변경(안 제13조, 안 제14조)

– 안 제13조(용역결과의 공개) 및 안 제14조(용역결과의 평가)를 조문 이해도 향상을 위해 각각 안 제14조 및 안 제13조로 변경하였음.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안 제13조)

- 연구결과 검수 시 유사성 검사 수행(안 제13조제3항)
- 용역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 판정(안 제13조제4항)
- 불이익 부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규정 신설
(안 제13조제5항 ~ 안 제13조제6항)

○ 용역결과의 공개관련 사항 개정(안 제14조)

- 용역결과의 공개 원칙(안 제14조제1항)
- 정보공개법 등의 이유로 연구결과 중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정보 “공개 예외”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로 공개 범위 확대(안 제14조제2항)
- 비공개사유와 공개 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규정(안 제14조제3항)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 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용역의 부정행위 검증 절차 의무화 및 제재처분 규정 신설, 연구 결과 공개범위 확대 등을 통해 연구용역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안 제13조 용역 결과의 평가와 관련하여

- 안 제13조제3항의 용역결과 평가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복수의 검사수단¹⁾을 활용하여 유사성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연구 부정 행위 검증을 위한 절차적 규정을 신설하였고,
- 안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연구 부정행위의 판정 및 부정행위에 따른 불이익을 부과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방안을

1) 검사수단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연구결과의 핵심 단어들을 입력하여 유사한 연구결과를 내려 받고, 해당 연구결과와 대조하여 유사성을 검토
- (학술지 인용색인) KCI 유사도 검사를 통해 유사도를 확인하여 일정 수준(예: 5%) 이상일 경우 문장들을 세부적으로 검증
- (자체표절검증시스템) 별도로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상용화되어 있는 표절검사시스템을 이용

마련하여 유사성 검증결과를 사후조치와 연계하였음.

- 다만, 안 제13조제6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결과 부정행위가 인정된 용역 수행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1항제1호²⁾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지만,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기능)³⁾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 의하면 내부 결정사항이 아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의 권리행사를 제한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안 제13조제6항 신설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14조의 용역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 안 제14조제1항에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전산 정보망을 통해 “지체없이”공개하도록 하여 신속한 연구결과 공유를 촉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 · 제7항, 제31조의2제1항 · 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 · 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6. 9.>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 ·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 9. : “불임” 관계법령 참조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8. 2. 28.]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 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서 심의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6. 9. 28)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시행(개정 2018. 2. 28.)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 2. 28.)

- 안 제14조제2항에 용역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비공개”인 현행 규정을 “관련 조문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공개 범위를 확장하여 구민들의 알 권리 강화와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였음.
- 또한, 안 제14조제3항에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와 정보의 공개 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 안 제14조는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구민들의 알 권리 보호과 투명한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정책 수립 및 구정 현안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는 학술연구용역⁴⁾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내실있게 정비하는 것으로, 용역평가에 대한 책임성 및 공정성 강화와 구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4)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3. 8. 6.]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3. 8. 6.]

[시행일 : 2021. 6. 23.] 제13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제7항, 제31조의2제1항·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6. 9., 2020. 10. 20.>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다.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마.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아. 그 밖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8. 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를 말한다)부터 5년(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21. 4. 21.] 제31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8.02.28.]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 복구 사업 및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서 심의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

정 2016.9.28)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개정 2018.2.28.)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2.28.)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